

# 제108회 총회 “헌법” 개정 부분(노회 수의 가결)

## 〈제2편 정치〉

헌법 제2편 정치		
현 행	개정 안	비고
제3장 교인	제3장 교인	
<p>제16조 [교인의 권리]</p> <p>세례교인(입교인)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.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.</p> <p>[개정 2019.12.19.]</p>	<p>제16조 [교인의 권리]</p> <p><u>세례교인(입교인)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. 또한 세례교인(입교인)과 아동세례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.</u></p>	<p>헌법 정치 제14조 [교인의 구분]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유아세례교인은 입교하여야 18세 이상으로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지게 됨을 명확히 함.</p>

# 본 교단 제108회 총회 시 개정된 총회 헌법시행규정
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		
현 행	개정 안	비고
제2장 정치	제2장 정치	
<p>제33조 [교회 및 노회 수습]</p> <p>7.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<u>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.</u> [개정 2017.9.21.]</p>	<p>제33조 [교회 및 노회 수습]</p> <p>7. <u>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.</u>(후단 삭제) [개정 2017.9.21.]</p>	<p>피선거권 제한은 헌법 정치 제 74조에 위반되어 <u>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83번(사고노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)</u> 해석으로 위헌 해석을 하였으나 그간 개정되지 않음.</p>
제3장 권징	제3장 권징	
<p>제61조 [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, 기피, 회피]</p> <p>1.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<u>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</u>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.</p>	<p>제61조 [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 및 제척, 기피, 회피]</p> <p>1. <u>삭제</u></p> <p>2. &lt;조항변경&gt; 2항을 1항으로</p> <p>3. &lt;조항변경&gt; 3항을 2항으로</p>	<p>헌법 권징 제56조 제3항에 기소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어 삭제함.</p>